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5 발의연월일: 2020. 6. 24.

발 의 자: 정춘숙·강병원·유동수

송옥주・김윤덕・강훈식

권인숙・박 정・권칠승

이용빈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용량 변동신고 기한의 규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지만, 법률에서 그 시 기에 대하여 전혀 위임이 없음.

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 대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, 신고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「고 용정책 기본법」에 마련하고자 함(안 제33조제1항). 법률 제 호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중 "직업안정기관"을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33조(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) | 제33조(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) |
|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 | ① |
| 화,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 | |
| 모의 축소, 조정 등으로 인한 | |
| 고용량(雇傭量)의 변동이 대통 | |
|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| |
| 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 | |
| 동에 관한 사항을 <u>직업안정기</u> |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|
| <u>관</u>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| 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|
| 다만 「근로기준법」제24조제4 | |
|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| |
|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